

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1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변경 필요
-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27조제8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준 변경

주요내용

- 도로명주소로 변경 (안 제2조)
 - 기존 : 사동 1593번지
 - 변경 : 석호공원로 1
- 위탁운영 갱신 기준 변경 (안 제8조)
 - 기존 :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 가능
 - 변경 : 위탁운영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으나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가능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7. 11. 22. ~ 2017. 12. 12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4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붙임 1 >

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사동 1583번지” 를 “석호공원로 1” 로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그 밖의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재산의 관리·운영능력
2. 재무구조의 안정성
3.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
4.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

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교통정책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과장 정규광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팀장 김종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효중 (행정 297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치) <u>교통안전체험교육장(이하 “체험교육장” 이라 한다)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3번지에 둔다.</u></p>	<p>제2조(위치).....<u>석호공원로 1</u>.....</p>
<p>제4조(사업) <u>체험교육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(생략)</p> <p>4. <u>그 밖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4조(사업)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8조(위탁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위탁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관리위탁재산의 관리·운영능력</u> 2. <u>재무구조의 안정성</u> 3. <u>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</u> 4. <u>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</u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⑥ <u>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